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 공간의 다양한 정비 수요에 대응하고 농촌 공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거환경 보호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유형의 취락지구를 신설하고, 일반인의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며, 농공단지의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건폐율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비시가화지역에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입한 성장관리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제1호 본문 중 “제40조 및 제40조의2”를 “제40조, 제40조의3, 제40조의4 및 제40조의5”로 한다.

제31조제2항제7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보호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 중 농촌의 주거환경 보호와 주거기능 강화를 위한 정비에 필요한 지구

제51조제2항제4호 본문 중 “이상”을 “이상(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누적하여 산정한다)”으로 한다.

제53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기존 공작물 중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공작물의 교체 및 보수(기존 허가 규모 이내의 동일한 용도에 한한다)

제53조제3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여러 차례에 걸쳐 절토·성토·정지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제53조제3호다목 중 “절토”를 “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포함하되, 그 밖의 절토”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7) 중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을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나목 중 “3만세제곱미터”를 각각 “5만세제곱미터”로 한다.

제70조의13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5조의2 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의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성장

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는 부분에 둘 이상의 읍·면 또는 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면 또는 동 단위로 구분된 지역의 면적을 각각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과 함께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0조의14제3항제1호 중 “제70조의13제5항”을 “제70조의13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과 함께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의2와 같다.

제84조제4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96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0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보호취락지구 : 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에관한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3조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21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별표 22 제1호가목 중 “농어가주택”을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2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대통령령 제3141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날 전에 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준공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시설 및 같은 표 제17호의 공장의 소유자는 별표 20 제1호라목, 같은 호 자목, 같은 호 차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표 제2호타목(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

까지 해당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7호 나목, 제78조제2항, 제107조제2호 및 별표 23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공단지에서의 건폐율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3. 제1호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제2항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

(2)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설치·운영하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너목(수리점 등 물품의 수리를 위한 시설만 해당한다)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사업에 따라 설치하는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나목·라목·바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시설과 같은 호 차목에 따른 시설 중 가목·나목·라목·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가목·나목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나목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미만인 것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의 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 ⑤ (생략) ⑥ 삭제 ⑦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 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u>제40조 및</u> <u>제40조의2</u> 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 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 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 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 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군관 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3. (생략)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생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⑦----- ----- -----. ----- ----- -----. 1. ----- ----- <u>제40조, 제</u> <u>40조의3, 제40조의4 및 제40조</u> <u>의5</u> ----- -----. ----- ----- ----- ----- ----- ----- -----. 2.·3. (현행과 같음)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현

략)

②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방재지구·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 5. (생략)

6. 삭제

7. 취락지구

가. (생략)

<신설>

나. (생략)

8. (생략)

③ ~ ⑦ (생략)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생략)

②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

행과 같음)

②-----

-----.

1. ~ 5. (현행과 같음)

7. -----

가. (현행과 같음)

나. 보호취락지구 : 녹지지역
·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 중 농촌의 주거환경
보호와 주거기능 강화를
위한 정비에 필요한 지구

다. (현행 나목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
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새 흙 넣기)·환토(흙 바
꾸기)·정지(땅고르기) 또는 양
수·배수시설의 설치·정비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지 않는 형질변경을 말한다.

1. ~ 3. (생략)

4. 옹벽 설치(제53조에 따라 허
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
설치는 제외한다)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
는 경우. 다만, 절토·성토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
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
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
로 정할 수 있다.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
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

-----.

1. ~ 3. (현행과 같음)

4. -----

이상(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
어지는 경우 누적하여 산정한
다)----. -----

-----.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
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는 그에 따른다.

1. (생략)

2. 공작물의 설치

가. ~ 다. (생략)

<신설>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
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
의 절토·성토·정지 등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
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
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 한한다) <단서 신설>

나.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허
가를 받은 기존 공작물 중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
지 아니하는 공작물의 교
체 및 보수(기존 허가 규모
이내의 동일한 용도에 한
한다)

3. -----

가. -----

-----.

다만, 여러
차례에 걸쳐 절토·성토·
정지하는 경우에는 누적하
여 산정한다.

나. (현행과 같음)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
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
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
토는 제외한다)

라. (생략)

4. ~ 6. (생략)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등) ①법 제5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말한다. 다만, 도시·군계획
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
른 법률에서 도시·군계획사업
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1. (생략)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
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
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
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

다. -----

-----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
메우기는 포함하되, 그 밖
의 절토 -----

라. (현행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1의2. -----

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가.·나. (생략)

다.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1) ~ 6) (생략)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1) ~ 6) (현행과 같음)

7) -----

시설로서 <u>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u>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 11) (생략) 라. ~ 바. (생략) 2. 부피 <u>3만세제곱미터</u> 이상의 토석채취 ②·③ (생략)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2. (생략) 3.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생략) 나. 부피 <u>3만세제곱미터</u>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 <u>1,500제곱미터</u> <u>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u> <u>은</u>----- ----- ----- 8) ~ 11) (현행과 같음) 라. ~ 바. (현행과 같음) 2. --- <u>5만세제곱미터</u>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가. (현행과 같음) 나. -- <u>5만세제곱미터</u> ----- ----- -----
--	---

⑤ ~ ⑦ (생 략)

제70조의1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⑤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성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70조의1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5조의2 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의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는 부분에 둘 이상의 읍·면 또는 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면 또는 동 단위로 구분된 지역의 면적을 각각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⑥ (생략)

제70조의14(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75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5조의2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는 부분에 둘 이상의 읍·면 또는 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면 또는 동 단위로 구분된 지역의 면적을 각각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과 함께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법 제2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제70조의14(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2항 단서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70조의13제5항에 해당하는 변경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3. (생략)

<신설>

4. (생략)

④·⑤ (생략)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제70조의13제7항-----

2. 3. (현행과 같음)

4.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과 함께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의2와 같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③ (생략)

④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 ~ 4. (생략)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단서 신설>

6. (생략)

⑤ ~ ⑨ (생략)

제96조(시행자의 지정) ① (생략)

②법 제86조제7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4. (현행과 같음)

5. -----

-----.

다만,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
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
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현행과 같음)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96조(시행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이란 <u>도시계획시설사업</u>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③ ~ ⑤ (생략) 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u><신설></u> 2. (생략)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법 제1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략)	----- <u>도시·군계획시설사업</u>----- -----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 ----- ----- ----- ----- ----- ----- 3. (현행 제1호와 같음) 2. <u>보호취락지구 : 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에관한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u> 1. (현행 제2호와 같음)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 ----- ----- 1. ~ 3. (현행과 같음)
---	--

<u>4.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u> <u>의신청에 관한 사항</u> 5. (생략)	<u><삭제></u> 5.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709